

대통령령 제 호

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2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4.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데이터전문기관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6조(업무) ① (생 략)	제16조(업무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법 제46조제1항제6호의2에	② -----
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	-----
업무”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	-----
말한다.	-----.
1. ~ 13. (생 략)	1. ~ 13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14. 「 <u>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</u>
	<u>에 관한 법률</u> 」에 따른 데이
	<u>터전문기관</u>